

IT공학과 대학원(박사과정) 학위논문 심사절차 규정

1. **[목적]** 본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IT공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위논문 심사절차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한다.
2. **[심사절차]** IT공학과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.
 - (1) **사전심사** : 최종 박사학위 논문제출 학기보다 최소 1학기 이전에 사전심사를 하여야 하며, 사전심사는 심사위원 5분의 3이상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을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.
 - (2) **학위청구 논문신청서 제출** : 박사학위 논문제출 사전심사에 통과한 자는 이 후 해당 학기에 학칙시행세칙 64조에 따라 학위청구 논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다.
 - (3) **예비심사** : 예비심사는 학칙시행세칙 68조의 학위논문 예비심사에 해당하며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1차 예비심사는 서면으로 실시하고 2차 예비심사는 공개발표로 실시한다.
 - (4) **본심사** : 학위논문 예비심사 종료 2주일 이후에 학칙시행세칙 69조의 본심사를 시행한다.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며 구술시험을 질의응답의 형태로 실시한다.
3. **[심사절차요건]** IT공학과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.
 - (1) **심사요청 학과승인** : 박사과정 학위논문 사전심사를 실시하려면 지도교수가 제청하여 학과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학과에 보관토록 한다.
 - (2) **공개발표** : 박사과정 학위논문 심사는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한다. 사전심사 및 본심사를 학과에 제청하면 주임교수가 학과 내에 공고를 해야 한다.
 - (3) **연구업적 기준확인** : 박사학위논문 본심사 이전에 “IT공학과 박사과정 졸업필수 연구업적 평가규정”에 따르는 연구실적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. 심사위원장이 실적물을 확인하여 학과에 제출한 후 평가기준을 통과하였을 경우에만 학위논문 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 이는 학칙시행세칙 74조의 학위논문 공표 규정을 대체한다.
 - (4) **사정위원회** : 학위논문 본심사 종료 후 IT공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한다. 최종 사정위원회에서는 연구업적 등 심사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한다.
4. **[시행일시]** 위의 졸업필수 연구업적 규정은 2009년 3월 1일 이후 졸업예정자부터 시행한다.
5. **[준용]** 학위논문 심사절차와 관련하여 위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. 학칙시행세칙에서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IT공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2008년 11월 5일

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 교수 일동

김 교 정 (인)

윤 용 익 (인)

박 화 진 (인)

임 순 범 (인)

이 중 우 (인)

박 영 호 (인)

*별첨 1) 대학원 학칙시행세칙과 학위논문 심사절차 규정 비교 표

- 참고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과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.

대학원 학칙시행세칙	IT공학과 학위논문 심사절차 규정
	(최소 1학기 이전) <u>사전심사</u> - 지도교수 제청 및 학과회의 동의 - 학과공고 및 공개발표 - 심사위원 5분의 3이상 참석 - 심사결과를 학과에 보관
(학위논문 제출학기) 학위청구 논문신청서 제출 [64조] -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 - 심사료 납부	(학위논문 제출학기) 학위청구 논문신청서 제출 -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 - 심사료 납부
학위논문 예비심사(2회) [68조] - 심사위원 5분의 4이상 참석 - 2회중 1회는 공개발표	학위논문 예비심사 (2회) - 심사위원 5분의 4이상 참석 - 1차는 서면심사, 2차는 공개발표
	<u>연구업적 평가기준 확인</u> - 심사위원장이 “IT공학과 연구업적 평가규정”의 실적을 확인하여 학과에 제출 후 본 심사 실시
학위논문 본심사 [69조] - 예비심사 2주일 후 심사위원 전원 참석 - 구술시험을 질의응답 형태로 실시	학위논문 본심사 - 예비심사 2주일 후 심사위원 전원 참석 - 구술시험을 질의응답 형태로 실시
	<u>최종 사정위원회</u> 통과 - 학과교수 전원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 - 연구업적 등 절차 확인
학위논문 인쇄본제출 [73조] - 본심사 후 1개월 이내	학위논문 인쇄본제출 - 본심사 후 1개월 이내
학위논문의 공표 [74조] -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	해당 없음